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연 월 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이 제정('26.3.5.)되고 산림기술용역업 지위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 권리 보호를 위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내용이 신설되는 등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법이 개정('26.2.27.)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통보해야하는 대상에 ‘통합특별시장’을 추가(제9조제2항)
- 나. 산림기술용역업 지위를 승계하는 선의의 양수인 권리 보호를 위해 산림기술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을 확인 요청하고,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와 서식을 규정(제16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6. 7. ~ 8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행정처분의 확인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수인등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산림기술용역업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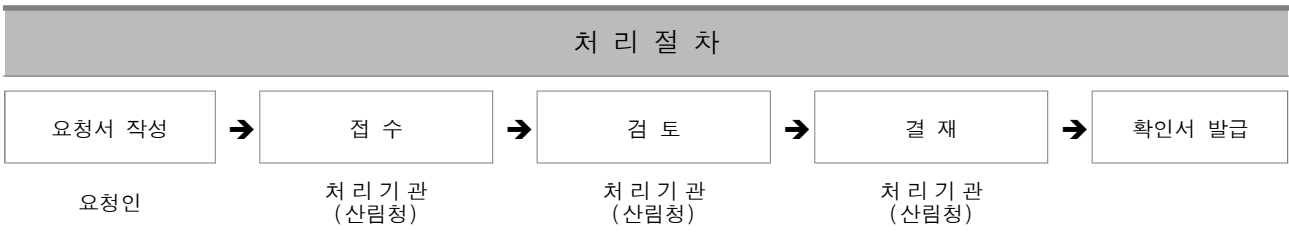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20일
요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산림기술 용역업 개요	상호(법인명)	등록번호	
	사무소 소재지(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전화번호	
양도인 등 (상속의 경우 공란으로 함)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	위 요청인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양수인등임을 확인합니다. 확인자(서명 또는 인)		

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산림기술용역업에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
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 귀하



산림기술용역업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

산림기술용 역업 개요	상호(법인명)	등록번호
	사무소 소재지(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
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

처분(적발) 날짜	처분내용	처분사유

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산림기술용역업에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산림청장 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9조(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) ① (생략)		제9조(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,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 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자격관리 수탁기관,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고,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(이하 “산림기술정보체계”라 한다)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.	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③ (생략)		③ (현행과 같음)		
<신설>		제16조의2(행정처분의 확인) ① <u>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수인</u> <u>등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중</u>		

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
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
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
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
청하려면 별지 제23호의2서식
의 산림기술용역업 행정제재 처
분 확인 요청서를 산림청장에게
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
산림청장은 종전의 산림기술용
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
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
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
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의3서
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행정제재
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
해야 한다.